

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

제 28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 4 차 본회의(2024.9.6.)

조례안 ·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거창군의회
[총무위원회]

목 차

-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[복지정책과] 1
-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기획예산담당관] 5
-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기획예산담당관] 10
-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전략담당관] 13
- 5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전략담당관] 16
- 6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[인구교육과] 20
- 7 거창군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[민원소통과] 22
-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[재무과] 24
- 9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[경제기업과] 27
- 10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[문화관광과] 29
- 11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[문화관광과] 31

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. 8. 16.

나. 발 의 자: 박수자 의원 대표 발의(11명)

(박수자, 이재운, 신중양, 신미정, 김향란, 최준규,
김홍섭, 표주숙, 이흥희, 신재화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박수자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3) 우선주차구역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5)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6)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취지이며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
-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우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우선주차구역”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 유공자 본인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
8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

제5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거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거창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② 군수는 주차장 설치·관리자에게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) 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대상시설의 용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
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)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]

가. 제안이유

-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그 기능을 구체화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함(안 제8조·제9조)
 - 가) 사회적 약자, 청년 등의 위원 비율을 20퍼센트 이상 구성
 - 나) 심의사항 추가
 - (1)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
 - (2)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

- 2)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확대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신설함(안 제11조·제12조의2·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가치 구현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
- 개정안 제8조제3항과 제4항에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검토 사항,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과 결산 평가를 명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기대되며
- 개정안 제9조제2항에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20%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·제3호를 제4호·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·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
2.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
3.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. 이 경우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.
4.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
5. 지역회의, 분과위원회,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
6.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제3항 중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2호가목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사회적약자(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),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획예산담당관, 복지정책과장, 건설교통과장, 도시건축과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·성별·연령·계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
- 가.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
 - 나.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다. 그 밖에 재정,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

제11조제2항 중 “대행한다.”를 “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6.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7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]

가. 제안이유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, 국민권의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의 관리의무를 강화함(안 제5조·제8조·제14조의2)
 - 가) 이율이 높은 계좌로 기금 관리
 - 나)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
 - 다) 심의안건 보충자료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 작성을 의무화
 - 라) 연도별 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
- 2)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(안 제16조)
 - 마) 2024년 12월 31일 ⇒ 2029년 12월 31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한을 연장하고, 기금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
-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‘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’ 방안에 따라
- 통합기금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계좌”를 “이율이 높은 계좌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군수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
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5.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
6.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심의자료 등) ① 군수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 참고자료로 붙여야 한다.

1. 계좌정보
2. 예치금액
3. 약정기간
4. 이자율
5. 예상이자액 등

②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.

1.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,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
2. 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

제16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준석]

- 가. 제안이유
 -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, 행사 및 공모전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,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.

- 나. 주요내용

- 1)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신설함(안 제16조)
- 2)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신설함(안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 제16조와 제17조를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

-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기부제도의 활성화)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교육, 행사 및 홍보
2. 공모전
3. 교류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,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,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)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(이하 “기부자”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
2. 표창,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
3.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,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준석]

가. 제안이유

-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축구의 대중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레저·문화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및 시설을 정함(안 제8조)
- 2) 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및 면제를 정함(안 제9조)
- 3) 준용을 정함(안 제10조)
- 4) 업무의 위탁을 정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
- 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를 신설하여 드론축구장 설치와 이용료,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, 제11조에 드론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(중전 제8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)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·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(이하 “드론축구경기장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.

1. 드론축구경기장,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
2. 드론축구의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
3.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9조(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) 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0조(「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경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1. 입장의 거절·퇴장
2. 이용허가, 이용의 우선순위
3. 이용자 준수사항
4. 이용의 제한 및 취소·정지
5.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
6.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드론산업의 육성사업
2.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
3. 드론 교육 및 지원
4.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
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준석]

가. 제안이유

-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, 학습 지원, 급식 지원, 상담프로그램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대상 :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2) 위탁범위 :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
- 3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간)
- 4) 재 원 : 235,184천원 / 2024년 기준(보조금 지원)
- 5) 위탁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동의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8조의2, 「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6조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며
- 변화되는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을 잘 빠르게 반영하고,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어린이·사회복지
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[심 사 보 고 서]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민원소통과장 노민섭]

가. 제안이유

-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및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대상 : 거창군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
- 2) 위탁사무 : 어린이·사회복지시설 급식용 식단 개발, 영양 관리 등
- 3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4) 재 원 : 199,600천원(국 99,800 도 29,940 군 69,860)
- 5) 위탁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혜진)

- 본 동의안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43개소와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으로써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에 해당됨.
- 현재 어린이 급식시설 43개소가 운영 중이나 2026년 사회복지 급식시설 23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며,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이므로 식품과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[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준석]

①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(변경)

1. 제안이유

-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부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 교환으로 취득하려던 토지를 매입 취득하고, 추가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개 요

- 1) 위 치 : 거창읍 정장리 819-10번지 일원
- 2) 사 업 명 : 지식IN 거창아로리타운 조성사업
- 3) 사업기간 : 2024. ~ 2027. (48개월)
- 4) 사 업 비 : 29,738백만원 (증3,125백만원)
- 5) 개발면적 : 80필지, 49,246㎡(증37필지, 10,316㎡)
- 6) 사업내용 : 단독주택 부지 47필지 조성, 타운하우스 16세대, 다누리복합문화센터,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

나. 취득재산 세부내역

- 당초 : 16필지, 14,898m²(4,506평)
- 변경 : 25필지, 19,544m²(5,912평)

다. 처분재산 세부내역

- 당초 : 8필지, 3,660m²(1,107평)
 - 변경 : 해당없음
- ※ 사업계획 확대변경에 따른 취득방식 변경(교환 ⇒ 매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①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(변경)

- 본 계획안은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행안부 등 8개 부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해 거창군 등 7개 시·군이 선정되었으며, 올해는 강원도 영월군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.
- 다수의 지자체에서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규모확장, 접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경제교통과장 이정희]

가. 제안이유

- 2025. 1. 준공 예정인 「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」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대상 :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
- 2) 위탁사무 : 복합문화시설, 다목적체육시설 운영 등
- 3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4) 재 원 : 60,000천원/연 (군비)
- 5) 위탁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
 - 직영의 경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1년차에 45.4%이지만 매년 지출이 늘어나 5년 후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41.6%로 줄고,
 - 민간위탁의 경우 1년차에 51.2%로 나타났지만, 5년 후에는 근소하게 늘어나 51.7%가 되므로 직영 대비 민간위탁이 예산 절감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옴.

- 또한, 본 건물은 승강기베스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산업단지 근로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바, 수요자의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, 직영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 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[심 사 보 고 서]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임양희]

가. 제안이유

-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해 조성한 신라촌 조성사업 시설물인 설화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갱신을 추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대상 : 설화구전관(지상2층)
- 2) 위탁사무 : 설화구전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
- 3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4) 예산지원 : 해당없음
- 5) 위탁방법 : 수의계약(재계약)
 - ↳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(대표 신수범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동의안은 거창읍 가지리 중촌마을 내 위치한 설화구전관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있고, 필요할 경우 기존 수탁기 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 기간 갱신 대상이 되며, 위탁기간 3년은 가능함.
- 다만,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6.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. 8. 16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24. 8. 16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
(2024. 8. 3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임양희]

가. 제안이유

-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됨에 따라 운영·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대상 : 거창 목재문화체험장
- 2) 위탁사무 : 시설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3)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4) 예산지원 : 55,000천원/연 (군비)
- 5) 위탁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박혜진]

- 본 동의안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부터 계속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왔으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, 목공·교육·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, 지역 목공 관련 인적 자원의 참여와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보여짐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